기 고 노 백 린 완도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상향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어느덧 약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입후보예정자들은 각자의 선거운동준비를 하고 있을 시기이기도 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선거인이 되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후보자는 합리적인 공약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야하고 조합원들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해야한다.

각 조합의 미래는 선거에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는 위에도 말했듯이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은밀성,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매수·기부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위법행위 총 조치건수 868건 중 349건(40.2%)이 금품매수·기부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였고 이는 전체 위법행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이러한 금품매수·기부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관련 선거범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매수·기부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신고·제보가 위법행위의 단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기존 1억원이었던 포상금 최고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바로 조합원들이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단 위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데 앞장서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社 說

살생물제품 유통 강화해야

올해부터는 소독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살생물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양과 관계 없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제·개정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1t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8~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물질·제품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을 연간 1t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보다 촘촘하게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평화적 집회시위 조성 위해 소통 중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문화조성, 현재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다.

경찰은 전적으로 주최 측에서 집회시위 전 과정의 질서와 안전 유지를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경력배치로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응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참가자 간 또는 집회의 대상이 된 객체, 더 나아가 일반 시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에 따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경찰은 '대화경찰관 제도'를 시범운영,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중재하며,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의 불편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명·이해·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다.

이렇듯 제도적 시행도 중요하지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 시민 모두가 소통 하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집회참가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

박형영 /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119신고 후 행동요령 숙달 생활화 해야

연간 3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119구급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이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누른 후 대부분 보통 구급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119신고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의료지도를 받고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심정지 상황이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가 사고장소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를 유도하여 주면 구급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신분증이나 진찰권,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약을 챙기고 미리 가스 불을 끄는 등 나갈 준비를 해둔다.

보통 현장에 도착하면 구급대가 도착해서야 허둥지둥 지갑을 챙기고 창문을 닫는 등 준비하는 보호자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현장출발 시간이 느려지고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현재 상태, 과거 지병, 복용한는 약 등을 알려준다.

119신고 후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봤으니 숙지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또한 각 차량이나 우리 집에 작은 소화기 하나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박형태 / 무안소방서 정보관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得 얻을 득
能 능할 능
莫 없을 막
忘 잊을 망

得能莫忘

▷뜻: 사람으로써 알아야 할 것을 배운 후(後)에는 잊지 않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